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28

발의연월일: 2024. 8. 12.

발 의 자:이상휘·서일준·정동만

구자근 • 최수진 • 김태호

최은석 • 박상웅 • 이헌승

박성훈 · 강명구 · 강민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리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조사를 통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미흡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등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자 및 그 유족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 규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거와의 완전한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의2,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 중 "화해를"을 "화해와 그 아픔에 대한 보상을"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진실규명결정 사건"이란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제2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을 말한다.
- 2.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34조의2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다.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를 입은 사람
 - 라.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사람

3. "유족"이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조치"를 "보상 등 조치"로 한다.

제34조 중 "피해 및"을 " 피해 보상 및"으로 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① 진실규명결 정 사건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관련자의 확인 및 그 유족 해당 여부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관련자 및 그 유족 보상금의 심의 · 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
- 3. 관련자 중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의3(보상 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34조의4(보상금) ①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 제34조의5(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제26조의 진실규명결정을 제 28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

-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 제34조의6(보상금의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 제34조의7(결정서정본 송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 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 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4조의8(재심의)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34조의6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34조의7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34조의6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 제34조의9(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제34조의7에 따라 결정 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의10(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34조의11(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34조의12(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6에 따른 결정기한이 지나도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하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34조의1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보 상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배상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 법」 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 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진

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진실규명결정 사건 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34조의14(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3.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 또 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34조의15(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 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의16(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그 보 상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 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1조 중 "위원회 위원"을 "위원회 또는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등"으로 한다.

제42조 중 "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등"으로 한다.

제43조 중 "위원회가"를 "위원회등이"로, "진실화해위원회 또는"을 "진실화해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또는"으로 한다.

제44조 중 "위원회"를 "위원회등"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으로 한다.

②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으 로 한다.

③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 제1조(목적) -----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 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 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 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 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 -----화해와 아픔에 대한 보상을-----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신 설>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실규명결정 사건"이란 제 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제2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조 사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을 말 한다. 2.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34조의2

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 람

-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라.진실규명결정사건으로인권침해사실이확인된사람
- 3. "유족"이란 진실규명결정 사 건으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 으로 인정된 사람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 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 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 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 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 회의 조치

제34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진실 규명사건 피해자의 <u>피해 및</u> 명 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 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 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신 설>

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 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유 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 다.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 회의 보상 등 조치

제2/조(구가이 이므) -----

MI 141 (47) 4 1 1	
	및

제34조의2(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① 진실 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또는 그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 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관련자의 확인 및 그 유족

- 해당 여부의 심의 · 결정에 관

 한 사항
- 2. 관련자 및 그 유족 보상금의 심의 · 결정과 지급에 관한 사 항
- 3. 관련자 중 상이자의 장해등 급 판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보상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u>⑥</u>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신 설>

<신 설>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보상 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 여야 한다.

제34조의4(보상금) ①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
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34조의5(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 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 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 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제26조의 진실규명결정을 제28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

<신 설>

<신 설>

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 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할 수 있다.

제34조의6(보상금의 결정) 보상심의 의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하다.

제34조의7(결정서정본 송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의8(재심의) ① 보상심의위

 원회가 제34조의6에 따라 결정

 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34조

<신 설>

<신 설>

의7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34조의6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34조의9(신청인의 동의와 보상 금의 지급) ① 제34조의7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 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 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 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10(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 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 할 수 없다.

제34조의11(조세 면제) 이 법에

<신 설>

<u>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u> <u>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u> <u>다.</u>

제34조의12(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6에 따른 결정기한이 지나도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 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 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한다.

제34조의13(다른 법률에 따른 보 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배 상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 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14(보상금의 환수) ① 국 가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 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 오

- 2.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3.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 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 수의 예에 따른다.
- 제34조의15(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법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그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제41조(비밀준수 의무) <u>위원회 위</u> 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u>위원회</u>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감정 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u>위원</u> 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 여하거나 <u>위원회</u>의 업무를 수 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u>위원회</u>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 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u>위원</u> 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 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u>위원회</u>의 위원·자문기구의 구 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

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의16(소멸시효) 이 법에 따
른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1조(비밀준수 의무) <u>위원회 또</u>
는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위원
회등
위원회등
위원회 <u>등</u>
위원회등
위원회등
<u>.</u>
제42조(자격사칭 금지)
<u>위원회등</u>

칭하여 <u>위원회</u>의 권한을 행사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u>위원</u> <u>회가</u> 아닌 자는 <u>진실화해위원</u> <u>회 또는</u>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u>위원회</u>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 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 다.

제45조(벌칙) ①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 2.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u>위원회능</u>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위원회등
 제45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
<u>위원회등</u> 2 <u>위</u>

<u>위원회</u> 의 권한을 행사한 자	원회등
3. (생략)	3. (현행과 같음)